

● 제285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3. 7.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300

## I. 조례안 개요

###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고병국 의원 외 11명
- 나. 제안일 : 2018. 12. 28.
- 다. 회부일 : 2019. 1. 7.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 매년 의정운영공통경비 배분 방침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 예산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별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를 15명 이내로 변경함(안 제37조제6항).
-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특별위원회 활동 예산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7조제9항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개정안은 매년 의정운영공통경비 배분 방침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 예산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별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기하고자 제안된 것임.

### 2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 및 예산 지원 관련 (안 제37조제6항 및 제9항)

- 「지방자치법」 제56조<sup>1)</sup>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 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20명 이내의 위원들을 선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참고자료1).
- 현행 조례가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2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특별위원회 활동예산이 위원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점(참고자료 2)을 감안했을 때 개정안과 같이 위원정수를 15명 이내로 할 경우 보다 원활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 특별위원회 활동 예산은 의정운영공통경비<sup>2)</sup>운영 계획(의장방침)에 따라 특별위원회 구성 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일반특위 1,000천원, 조사특위 5,000천원을 지원하고 있음(참고자료 2).
- 그러나 최근 일부 특별위원회의 경우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산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특히 많은 위원 수가 활동하거나 활동기간이 장기간 지속되는 특별위원회의 경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제약하는 수준의 예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음.
- 또한 제10대 의회의 경우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활동비 지급 지연으로 인해 위원회 활동의 제약이 따르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음.<sup>3)</sup>
- 상임위원회와 달리 특별위원회는 심사대상이 ‘특정한 안건’이라는 점과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일시적’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예산부족 및 지원이 지연 될 경우 위원회 전체 활동의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상당하여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이에 개정안은 위원정수를 15명 이내로 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예산을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며, 의장으로 하여금 경비지급 기준 등을 정하도록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특별위원회 원활한 활동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의회비 중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를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분야별 연구활동 지원경비로 집행이 가능함.

3)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특별위원회의 경우 '18년 8월 구성이 이뤄졌으나, 활동예산 지원이 지연되어 현장시찰 및 정책 도출을 위한 전문가 활용 등의 위원회 활동 일정이 미뤄지는 상황 등이 발생한 바 있음.

- 다만, 개정 내용을 시행할 경우 특별위원회 구성 시 위원정수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17개 광역 시·도의회 특별위원회의 예산지원 근거와 위원 정수 현황을 살펴보면(참고자료 4), 경상북도의회(9명), 전라남도의회(10명), 인천광역시의회(13명), 부산광역시의회(15명), 경기도의회(21명), 의 경우 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례로 위원정수를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한 곳은 없음.

#### 4 종합 의견

- 이상을 종합하면, 개정안과 같이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 안건 처리를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15명 이내로 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원활하고 안정적인 특별위원회 운영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됨.

## 「지방자치법」

-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 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 제3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간의 종료시 까지 안건이나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⑥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33명 이내로 한다.  
 ⑦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의장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⑧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할 경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15일전 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2015년 특별위원회 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위원회명	구분	특위명(목적)	지원금액	비고
계				16,520	
1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일반	◦ 한옥지원 특별위원회	1,000	
2	교육위원회	조사	◦ 하나고등학교 특례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5,000	
3	환경수자원위원회	일반	◦ 항공기소음 특별위원회	1,000	
4	보건복지위원회	일반	◦ 메르스 확산방지대책 특별위원회	1,000	
5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조사	◦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 운영 및 인허가 특례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5,000	
6	기획경제위원회	일반	◦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1,000	
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일반	◦ 지역균형발전지원 특별위원회	1,000	
8	문화체육관광	일반	◦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지원 특별위원회	520	
9	행정자치위원회	일반	◦ 인권 특별위원회	1,000	

## ○ 2016년 특별위원회 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위원회명	구분	특위명(목적)	지원금액	비고
계				12,750	

1	행정자치위원회	일반	◦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1,000	
2	행정자치위원회	일반	◦ 윤리특별위원회	1,000	
3	기획경제위원회	조사	◦ 서울국제금융센터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5,000	
4	환경수자원위원회	일반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1,000	
5	교통위원회	일반	◦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	1,000	
6	교통위원회	일반	◦ 서부지역 광역철도건설 특별위원회	1,000	
7	교통위원회	일반	◦ 서울메트로 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1,000	
8	환경수자원위원회	일반	◦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1,000	
9	교통위원회	일반	◦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750	

○ 2017년 특별위원회 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위원회명	구분	특위명(목적)	지원금액	비고
<b>계</b>				<b>5,000</b>	
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반	◦ 2018 평창동계 올림픽 지원 및 스포츠 활성화 특별위원회	1,000	
2	보건복지위원회	일반	◦ 여성 특별위원회	1,000	
3	행정자치위원회	일반	◦ 마을과 학교 협력 특별위원회	1,000	
4	기획경제위원회	일반	◦ 소상공인 지원 특별위원회	1,000	
5	교통위원회	일반	◦ 면목선 등 도시철도 건설사업 조속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1,000	

○ 2018년 특별위원회 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위원회명	구분	특위명(목적)	지원금액	비고
계				4,000	
1	기획경제위원회	일반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	1,000	
2	행정자치위원회	일반	◦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1,000	
3	교통위원회	일반	◦ 항공기소음 특별위원회	1,000	
4	교통위원회	일반	◦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1,000	

특별위원회 명칭	활동기간	위원수	구성목적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특별위원회	2018. 9. 14 ~ 6개월	15명	청년문제에 대한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청년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청년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함.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2018. 12. 14 ~ 6개월	20명	서울 서남권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항공기 소음 관련 피해 구제 및 보상, 소음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 및 한국공항공사에 적극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2018. 12. 14 ~ 6개월	19명	서부지역 서울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서부지역 광역철도(원종홍대선) 건설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함.

연번	17개시도 의회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 현황	예산 지원 근거	조례
1	강원도	X	X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2	경기도	21명 이내	X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운영 조례
3	경상남도	X	X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4	경상북도	9명 초과 할 수 없음	X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5	광주광역시	X	X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6	대구광역시	X	X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7	대전광역시	X	X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8	부산광역시	15명 이내	X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9	서울특별시	20명 이내	X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10	세종특별시	X	X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11	울산광역시	X	X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12	인천광역시	13명 초과 할 수 없음	X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13	전라남도	10명 이내	X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과 운영에 관한 조례
14	전라북도	X	X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15	제주도	X	X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 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16	충청남도	X	X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17	충청북도	X	X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과 운영에 관한 조례

#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382

## I. 조례안 개요

###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김경영 의원 외 16명
- 나. 제안일 : 2019. 1. 31.
- 다. 회부일 : 2019. 2. 7.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 단태아 임신과 달리 다태아 임신시 산모의 유산·사산, 조산, 미숙아 출산 등 신체적·정신적 위험도가 높아지고, 출산 후에도 양육 부담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따라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2013. 5. 30. “다태아 출산 휴가 연장·엽산제 등 지원확대”)를 기점으로 2014년 「근로기준법」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을 통해 다태아를 임신·출산하는 근로자와 공무원의 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였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도 그에 따라 2015년에 개정된 바 있음.

- 다태아 임신·출산시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시의원이 다태아를 임신·출산하는 경우에도 120일간의 출산 전·후 휴가를 보장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임신한 여성이원이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규정함 (안 제24조제2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근로기준법」,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개정안은 다태아 임신·출산 시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여성 시의원이 다태아를 임신·출산하는 경우 120일간의 출산 전·후 휴가를 보장하여 시의원의 다태아 출산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안된 것임.

### 2 의원의 청가 및 결석 관련 (안 제24조제2항)

- 2013년 권익위원회는 둘 이상의 아이를 동시에 출산하는 다태아(쌍둥이) 출산 가정에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해주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 당시 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임신중독증 등 임신 기간 산모의 질병과 2배의 육아 부담 등으로 일반 단태아 산모에 비해 고충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현재 OECD 여러 국가에서는 다태아 출산모에게 출산휴가를 약 37주~17주를 보장하고 있으며 국내는 약 17주(120일)의 출산휴가를 주고 있음(표-1).

<표-1> 선진국 출산휴가 기간 현황

구 분	프랑스	체코	폴란드	일본	독일	스페인	벨기에
단태아	16주(26주)	28주	18주	14주	14주	16주	15주
다태아	34주	37주	26주	22주	18주	18주	17주

※ 출처: 선진국 출산휴가 기간 현황, 권익위원회(2013).

- 국내에서는 다태아 출산 여성에게 출산전후휴가를 120일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 개정(2014)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2015) 또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표-2> 출산휴가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 2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특별휴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특별휴가)** ②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

- 이에 개정안은 여성의원이 한꺼번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즉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고, 출산 후 60일 이상의 출산 후 휴가 기간 보장을 보장해 모성보호 등에 앞장서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표-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생략)</p> <p>② 임신 중의 여성의원에게는 그 출산의 전후로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의원은 청가 및 결석계를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24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현행과 같음)</p> <p>② 임신 중의 여성의원이 청가 및 결석계를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그 출산의 전후로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 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sup>1)</sup>에 따른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안과 같이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 시의원의 출산 전후 휴가를 120일로 확대하여 보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보임.
- 참고로 의사담당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시의원의 다태아 출산휴가 확대는 시의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참고자료.1).

1)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③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란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 4 종합 의견

- 이상을 종합하면, 개정안과 같이 여성 의원이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보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모성보호를 위한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서(의사담당관) 검토의견

- 서울시의회는 현재 전국 시·도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임신 중 여성 의원에게 출산휴가를 시행하고 있음
- 다만, 2014년 이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개정으로 다테아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가 일반화된 데 반해 서울시의회 관련 조례는 자녀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출산휴가일을 정해 놓은 상태임
  - 이에, 금회 조례 개정을 통한 시의원의 다테아 출산휴가 확대는 시의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